

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구조대를 말한다.
- ② “물놀이 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설치·운영) ① 소방방재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.

안 제4조 제1항, 안 제5조,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중 “시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제2조[별표 1] 자원봉사 활동 경비 지급 기준의 범위안에서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물놀이 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구조대를 말한다.</p> <p>② “물놀이 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설치) 시장은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설치·운영) ① 소방방재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구성 및 임무)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<u>시장이</u>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 및 임무) ①----- ----- <u>본부장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시설 · 장비 등의 지원) <u>시장은</u>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·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시설 · 장비 등의 지원) <u>본부장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교육 · 훈련) <u>시장은</u>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교육 · 훈련) <u>본부장은</u>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.</p>
<p>제7조(지도 · 감독) <u>시장은</u>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 · 감독하여야 하며, 구조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7조(지도 · 감독) <u>본부장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활동비) <u>시장은</u> 구조대원에 대하여 <u>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활동비) <u>시장은</u> 구조대원에 대하여 <u>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[별표1]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,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.

② “물놀이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·운영) ① 소방방재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.

제4조(구성 및 임무)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.

② 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
2.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
3.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
4.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

제5조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·훈련)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구조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
2.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
3.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(활동비)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[별표1]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험가입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해보상)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·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용소방대설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